

2026

# 수산질병관리사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http://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완성

도서명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ISBN : 979-11-7393-097-3

발간일 : 2025-10-31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7,000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이하 법)

##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p17)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p40)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p67)

제4장 보칙(p87)

제5장 벌칙(p102)

제6장 범칙행위 처리의 특례(p108~111)

## [법상 용어]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양식자는 양식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운영자

## [약어]

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장관등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기관장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관리원은 수산질병관리원

품질관리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방역기관은 수산생물방역기관

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관

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사

검역관은 수산생물검역관

양식자는 수산생물양식자

면허증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사체는 수산생물의 사체

수출시설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해외시설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수출기준은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질병은 수산생물질병 또는 질병

거부등은 거부, 방해, 기피(회피)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1장 총칙

1~6조

### 1. 목적

-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수생태계

# 보호,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 2. 정의

### 가. 수산생물

1) 수산동물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및 다음과 그 정액, 알

- 연체동물 중 두족류
- 극피동물 중 성게류, 해삼류
- 척색동물 중 미색류
-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2) 수산식물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과 그 포자

나. 질병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해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

## 다. 수산생물전염병

### 1) 수산동물전염병

a)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

b)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 감시/관리가 필요한 다음 질병

-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젌스만 해당),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양서류의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 - 장관 고시 수산동물질병

### 2) 수산식물전염병

-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 감시/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

**라. 병성감정은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생화화학적 실험을 통해 전염병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마. 역학조사는 전염병 발생, 발생 우려시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다음**

# 활동

1) 전염병의

- 발생규모 파악

- 감염원 추적

2)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시  
원인규명

**바. 수산생물양식시설(이하 양식시설)**은  
수산생물 양식에 사용되는 양식장, 저수지에  
설치된 수조(유수식 수조 포함), 배관, 양식용  
구조물

**사. 수산생물집합시설(이하 집합시설)**은

수산생물 매매/교환 등을 위해 수산생물이

취합/교류되는 다음 시설

- 활어위판장, 활어공판장
- 수산물도매시장
- 수산생물 보관/저장 수조, 창고시설
- 수산생물식품 제조/가공 시설

아. 검역시행장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검역 하는 장소

자.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는 수산생물을  
진료(사체 검안 포함)하거나 수산생물 질병을  
예방하는 자로서 장관 면허 받은 자

차. 수산생물진료업(이하 진료업)은 수산생물

# 진료, 질병 예방

카. 수산생물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관리사회,  
대한수의사회, 질병/방역 법인/단체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것

타. 간이진단키트는 의료기기로서 수산동물의  
생리학적, 병리학적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재료 등의 제품

## 3.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

가. 장관은

- 1) 질병 발생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
  - 5년마다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시행 요
- 2) 시도지사에 수립된 관리대책 통보

## 나. 내용

- 예방과 조기 발견 신고체계 구축
- 긴급대책 수립/시행
- 관계 기관 협조
- 교육/홍보
- 정보 수집/분석
- 전문인력 육성
- 관리 시책

다.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관리대책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별 관리대책 수립/추진

#### 4. 의견수렴

- 장관은 수산생물 검역, 질병 방역 주요 정책에 대해 전문가 등 의견 들을 수 있다

5. 장관은 질병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수산생물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 종합계획 수립/시행 요

6.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